

##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2년 7월 1일

○ 회부일자 : 2002년 7월 3일

3. 제안이유

- 승강기 보수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,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 개정(2002.2.4, 법률 제6652호) 되어 시·도지사 권한사항으로 이양됨에 따라,
- 승강기 보수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- 승강기보수업 등록신청 관련 수수료 신설
  - 승강기보수업 등록신청 : 1건당 50,000원
  - 승강기보수업 변경등록신청 : 1건당 20,000원
  -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교부신청 : 1건당 20,000원

## 5. 검토의견

○ 충청북도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○ 본 조례는 2002년 2월 4일, 법률 제6652호로  
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 개정 공포되어,

승강기 보수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승강기 관리와 관련된  
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이양하고,  
이에 대한 수수료를 시·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,

2002년 8월 5일 개정된 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어, 본 조례를  
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붙임 : 충청북도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